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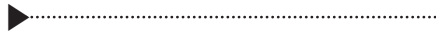
#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일 시 : 2007. 7. 10(화) 10:30~13:30  
장 소 : 춘천 세종호텔(3층 세종홀)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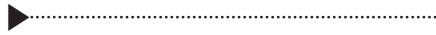
#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일 시 : 2007. 7. 10(화) 10:30~13:30  
장 소 : 춘천 세종호텔(3층 세종홀)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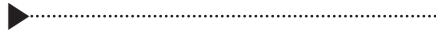
## 토론회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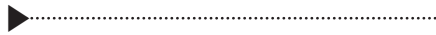
10:30 ~ 10:40      **위원장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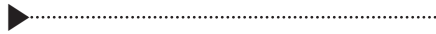
10:40 ~ 11:30      **주제발표**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침해와 구제방안  
발 표 - 한 진 만 위원(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1:30 ~ 12:30      **종합토론**  
사 회 - 박 형 일 위원(변호사)



12:30 ~ 13:30      **오찬 및 간담**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목 차

1.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	1
2. 사이버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1) 명예훼손 .....	2
(2) 저작권 .....	4
(3) 사생활의 비밀 .....	8
(4) 초상권 .....	9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언론조정·중재 대상 언론으로 인터넷 신문 포함 .....	11
(2)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 창설 .....	13
(3) 조정·중재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까지 확대 .....	14
(4) 고유의미의 중재제도 도입 .....	14
(5)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	14

주제논문

#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한진만 위원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한 진 만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로 양분되어 각각의 매체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가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접근 가능한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그리고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 장치로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유할 수가 있다(이재진, 2000).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사이버스페이스(사이버공간)는 쌍방향성, 공간적 비제약성, 접근 및 전파의 용이성, 탈통제성, 익명성 등에 기반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표현, 무제한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정상규, 언론중재, 2005년 봄호).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낙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범죄형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인격권(reputational right)

보호와의 갈등이다(이재진, 2000).

즉, 사이버공간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침해,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인간들이 다른 의사소통 공간에서 갖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익명성과 규제기술의 한계 등은 이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정상규, 언론중재, 2005년 봄호).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reality)과 가상(virtual reality)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이재진, 2000).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인 사이버 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 중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내용과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사이버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사이버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 중에서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저작권,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법인에게도 명예가 인정되는데,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혐오 또는 경멸을 받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김재형, 2004).

인터넷의 영향력 확장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표현이 오프라인 언론기관을

통해 공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기관의 진실확인 의무와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전파행위를 넘어 새로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언론기관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도 통상 오프라인 언론기관이 인터넷 언론기관보다 그 신뢰도가 높고 그 표현의 기억도 오래 유지되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언론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통상 익명의 가해자를 밝히기도 어렵고, 밝혔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공표되거나 전파되는 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1) 판례

가.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손해배상(기)】

나.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거나 그 발언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여 발언 직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

[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11.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2) 저작권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접하거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텍스트, 데이터, 프로그램,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속, 전자우편, 대화방, 검색엔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사회를 주도하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을 통해 각종 저작물의 내용을 검색·다운로드·업로드·전송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하는 자이기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텍스트, 데이터, 프로그램, 이미지 등의 콘텐츠 내용상 각종 표현행위에서 저작권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이동훈, 20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경우 그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되어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버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내용으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sup>1)</sup>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私的利用을 위한 複製라고 주장하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아도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저작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이용자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침해에 원인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할 경우,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가하는 문제가 국내외의 쟁점이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에도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된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특성상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침해를 한 개개의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자로서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명백하나, 인터넷 특성의 하나인 익명성 때문에 침해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고소를 하려고 해도 개개의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는 충분한 금전적 능력이 없어, 저작권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해주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풍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

1) 저작권법 제27조 私的利用을 위한 複製

저작권 보호는 원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창조성을 발휘해서 우수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저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의 법리'가 넓게 해석되어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 입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1) 판례

가.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음악저작권 침해를 혐의로 기소. 2002년 7월 12일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용 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부는 '소리바다는 인터넷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루어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힘.

#### \* UCC로 인한 저작권의 문제

최근 인터넷사업자가 아닌 이용자가 직접 만드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 스스로가 제작·편집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피드백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의 관심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대형포털 사업자들이 관련 서비스전략을 한층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산업적 논의도 활성화를 띄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UCC가 초기 텍스트 기반이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멀티미디어콘텐츠로서 각종 이미지·동영상·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2007-3-2, 12쪽).

참여·개방·공유·집단지성 및 신뢰 등을 모토로 한 Web2.0에 뿌리를 둔 UCC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UCC는 전문저작자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주로 작성되어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 의하여 이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텍스트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UCC도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UCC제작은 저작물의 창작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UCC제작자 자신이 순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제작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되어 저작권법상의 아무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UCC가 아무런 창작성을 가미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되고 있는 UCC 동영상의 84%가 기존 저작물의 불법적인 편집이거나 복제물이라고 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7~10월에 국내 10개 UCC 전문포털을 대상으로 6차례 걸쳐 실시한 'UCC 현황조사' 보도자료<sup>2)</sup>에 따르면 순수창작물은 16.5% 불과하고 나머지 83.5%는 기존 저작물의 불법적인 편집이나 복제물인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UCC가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여 불법으로 사용한 것 인지를 알 수 있다.(강상구, 2007)

일반적으로 저작권문제를 중심으로 UCC제작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이대회, 2007). 첫째로는 타인의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현재 저작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에 창작성을 가미하여 2차 저작물로서 UCC를 제작하지만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였지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UCC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넷째로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였지만 UCC와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가 부인되는 경우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첫째로서 UCC와 관련된 주체간의 상호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보도자료(2006. 11. 9), '동영상 UCC 80%이상 불법 복제물'

### (3)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는 일찍이 대법원 판결(1998. 9. 4. 선고 96다 11327)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결국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생성된 개념으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라 한다. 그러나 공법 분야에서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프라이버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며, 프라이버시권은 명예권과 함께 인격권의 중요한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재형, 2004).

자료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영석, 2003, 560쪽).

첫째, 시스템 운용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둘째,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정보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행위 포함)

셋째, 미디어운용자가 가입자들에게 개인의 신상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넷째, 환경감시를 명분으로 여러 정부기관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거리낌없이 이용하는 경우

#### (4) 초상권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2005년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 1) 판례

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은, 피고 방송사가 원고를 직접 출연시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영업에 이용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는 동의하였지만, 초상의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하여, 피고들이 보험사들에게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의 사연을 소재로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은 원고가 처음에 동의를 한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38면).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은, 학원업, 연예인 대리, 영상·음반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회사에서 투자자모집을 위한 광고전단에 유명한 연극배우 겸 영화배우인 원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은 유명 코미디언인 원고 모씨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그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만들어서 유행시킨 유행어인“...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라는 편견을 버려”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여 놓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sup>3)</sup>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새로운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으로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가운데서도 언론중재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존속되어 계승되었고,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더불어 언론에 의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망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이 2005. 1. 27 제정, 공포되고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sup>4)</sup>

언론중재법은 과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 규정한 것으로 1980년 이래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에 기초하여 언론중재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된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종래의 언론중재제도와 달라진 부분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①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을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

3) 한위수(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위원회주최 세미나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발제논문

4) 언론중재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한 것, ②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한 것, ③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 ④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한 것, ⑤ 종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던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기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1) 언론조정·중재 대상 언론으로 인터넷 신문 포함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을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하였다. 여기서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구제절차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포털 뉴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 뉴스를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포털 뉴스를 언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 전통적인 뉴스 매체인 신문, 방송 등에서 벗어나 인터넷의 포털 뉴스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뉴스제공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그 자체에 의한 것보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다. 포털 뉴스는 뉴스를 스스로 생산한다기보다 단순히 매개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로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간편·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포털 뉴스도 독자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있고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게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행사함은 물론 기사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뉴스전달자의 지위에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포털 뉴스 사업자가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짐이 당연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언론사가 뉴스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단순히 매개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의 충실을 도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관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양재규, 2006).

#### 1) 언론으로 보는 입장

첫째, 언론관계법은 아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의 개념에 따르면 포털 역시 인터넷 언론에 해당한다. 공선법 제8조의 5는 언론관계법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인터넷 언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둘째, 뉴스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포털은 주요 소비처가 되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3대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존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의 이용자 수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셋째, 뉴스의 생산·공급 측면에서도 포털은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배포력에 있어서 포털은 이미 기존 언론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각 포털은 공급받은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도 한다. 나름대로의 해석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회적 의제까지도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 2)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포털은 뉴스 유통사일 뿐이지 뉴스생산자(언론사)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특히 현행법상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 3) 법원의 입장<sup>5)</sup>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당 포털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향소로 인하여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여 이 판결 하나로 우리 법원이 포털사에게 매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가장 보수적인 법원의 시각에서도, 이제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단지 매개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 (2)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 창설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즉 언론사의 고의성과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설사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도 언론사가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한 허위보도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sup>6)</sup>

---

5) 2006년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0단독(김승곤 판사), 사건번호 -2005가단18300, 원고-전모 의원, 피고-N사, C사

6)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에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을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조정·중재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까지 확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의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sup>7)</sup>

이는 종래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만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으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4) 고유의미의 중재제도 도입

종래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 등에서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종래의 ‘중재’를 ‘조정’이란 용어로 바꾸고 제24조 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언론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 졌음은 물론 언론중재제도의 명칭이 실질과도 부합하게 되었다.

### (5)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

7) 또한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①항에서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래 구 정기간행물법 제19조 제1항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추후보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에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였다.

이는 반론보도청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당사자간의 견해차이가 커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조정단계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구제가 지연되는 단점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형돈(2007), 공영방송사제작 프로그램의 공공이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07년 한국언론법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김영석(2003),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
- 김재형(2004),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한국언론법학회
- 양재규(2006),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세미나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발제논문
- 이동훈(2003),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헌법학연구 제9집 제1호
- 이재진(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 정상규(2005),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5년 봄호
- 한위수(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세미나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발제논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2007-3-2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시 행 : 2005. 7.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평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